



www.seoul.go.kr
제 3187호
2013. 8. 5. (월)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조 례]

제5524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2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5524호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

2013년 8월 5일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조제2항5호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1. 제안이유
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2. 주요내용
제4조제2항5호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한다.



기관의 장

선
람

공
람
